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 관

[개정 2026.1.22.]

학교법인 정의학원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성경적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지도자와 국가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령 전 아동교육, 초등·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정의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서울여자대학교 (이하 “대학교” 라 한다.)
2. 화랑초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라 한다)
3.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이하 “유치원” 이라 한다.)

(개정 2015.8.18.)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에 둔다. (개정 2015.8.18.)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 2015.8.18.)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8.18.)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25.6.24.)
2. 감사 2인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개정 2025.6.24.)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 <삭제>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파송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②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④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8.)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항존직(恒存職) 이상의 직분을 받은 자

제24조의3 (개방임원의 정수) ① 이 법인의 개방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8.)

1. 이사 - 4인 (개정 2025.6.24.)
2. 감사 - 1인

제24조의4 (개방임원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 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③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15.8.1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1.4.26.)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임원은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

제24조의5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제24조의2의 개방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대학 평의회에 둔다. (신설 2018.4.27)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1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전부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8.18., 2021.4.2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삭제> (2015.8.18.)
- ⑥ <삭제> (2015.8.18.)
-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1.12.9.)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1.12.9.)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1.12.9.)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1.12.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8.18.)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결합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8.18.)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8.)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8.)(개정 2016.11.1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2015.8.18.)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8.)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8.18.)

제31조의2 (위원회) ① 법인은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8.18.)

② 위원회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8.)

제32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8.)

제33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학교법인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

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2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8.18.)

제35조의3 (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5., 2021.1.27.)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신설 2021.1.27.)
4. 학생 2인(학부 재학생 1인, 대학원 재학생 1인). (개정 2019.4.25., 2021.1.27.)
5. 동문 2인. (개정 2019.4.25., 2021.1.27.)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개정 2021.1.27.)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7.)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①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각 단위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전체 교수회
2. 직원은 전체 직원회
3. 조교는 조교회의 (개정 2021.1.27.)
4. 학부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대학원 원우회 (개정 2019.4.25., 2021.1.27.)
5. 동문은 총동창회 (개정 2021.1.27.)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7.)

제35조의5 (평의회 의장 등) ①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5.)

제35조의7 (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업, 축산업 및 임업
2.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 출자
3. 유가증권 매매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분 출자 및 임대사업을 경영한다.

1. 한국기독교연합회관(1개층) 투자사업
2. <삭제>
3. 경북빌딩(근린생활시설) 임대사업

제38조 (수익사업체 주소) 제37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연지동) 외 (개정 2015.8.18.)
2. <삭제>
3. 경북빌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0길 27 (서초동) (개정 2015.8.18.)

제39조 (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할청에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시킨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43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1.12.9.)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하 정관에서 말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한다)은 기독교인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11, 2019.6.20.)

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면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1, 개정 2019.6.20.)
2. 강사 및 겸임교원 등(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0.)
3.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1, 개정 2019.6.20.)

④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당해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급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3. 근무조건 : 강의시간·소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⑤ <삭제>

⑥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 기타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15.8.18.)

⑦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계약제 교원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학교의 장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5.11.12., 2016.11.11)

⑧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16.11.11)

⑨ 삭제 (개정 2015.8.18.)

⑩ 제1항의 학교의 장 중 정관 제3조 3호의 유치원 원장은 대학교 교수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8.18., 2016.11.11)

⑪ 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8., 개정 2020.12.18.)

⑫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제43조의2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총장은 강사 및 겸임교원 등(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6.20.)

② <삭제>

제43조의3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의4 (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8.18.)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8.18.)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23.12.6.)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

치단체, 교육감 등 선출직 선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8.)

② 휴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5.8.18.)

제45조 (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5.8.18.)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8.)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8.)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3.12.6., 2024.2.1.)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8.)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18.)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18.)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8.18.)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5.8.18.)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5.8.18.)

② 제4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8.)

제48조 내지 제50조 <삭제>

제50조의 2(명예퇴직수당) ①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9.)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

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이 조에서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유치원” 이하는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1, 2019.6.20., 2022.4.28.)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8.)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1)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대학원장·학장 등을 보직제청 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18.)
3.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임용관련 주요사항 (신설 2019.6.20.)
4. 대학교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8.18., 2019.6.20., 2022.4.28.)

② 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교육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③ 초등학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4.28.)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신규교원의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감·임용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전체 교원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8. 인사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14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5.8.18., 2022.4.28.)

② 초등학교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매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선출직 5명, 학교장이 임명한 임명직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4.28., 2023.1.31.)

③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8.18., 2022.4.28.)

② 초등학교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교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2.4.28.)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4.28.)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2.)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2., 2022.4.28.)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7인 (개정 2022.4.28.)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2.4.28.)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4.28.)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2.4.28.)

③ 삭제 (개정 2015.8.18.)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제59조2(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8.18.)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신설 2015.8.18.) (개정 2016.11.11)

제59조의3(운영세칙) ① 교원징계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5.8.18.)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8.18.)

제60조 <삭제>

제61조 내지 제68조 <삭제>

제3절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8.18.)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4.2.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 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각급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1.12.9.)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직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18.)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별도로 조직한다. (개정 2024.12.3.)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징계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8.)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4급이상으로 보하거나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1.9.24., 2021.12.9.)

② 법인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9.1.30., 2021.9.24., 202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1.12.9.)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2 (총장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 교목실, 비서실, 대외협력실, 데이터혁신실, 인권센터, 바름인재교육원, 미래첨단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3.4.25., 2025.6.24., 2026.1.22.)

② 비서실에는 비서팀,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 데이터혁신실에는 데이터혁신팀, 바름인재교육원에는 행정기획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20.1.20., 개정 2025.6.24., 2026.1.22.)

제91조 (학장·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① 대학본부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 사무처, 기획처, 입학처, 산학연구처, 교육혁신단, 국제교류단, 창업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2021.8.25., 2023.6.23.)

② 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4급 이상으로,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4급 이상으로, 단장, 부장, 실장, 원장,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6.23.)

③ <삭제> (2022.12.7.)

④ <삭제> (2022.12.7.)

⑤ <삭제> (2022.12.7.)

⑥ <삭제> (2022.12.7.)

⑦ <삭제> (2022.12.7.)

⑧ <삭제>

⑨ <삭제> (2022.12.7.)

⑩ <삭제> (2015.8.18.)

⑪ <삭제> (2022.12.7.)

⑫ 각 처와 단에는 필요시 팀, 센터 및 실을 둘 수 있고, 각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며,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2022.12.7.)

⑬ <삭제> (2018.7.23.)

⑭ <삭제> (2018.7.23.)

⑮ 제1항,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7.)

제92조의2 <삭제> (2024.2.1.)

제92조의3 <삭제> (2020.7.30.)

제92조의4 (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제92조의5 <삭제> (2020.7.30.)

제93조 (단과대학 및 대학원 등의 하부조직)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팀(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② 교학팀(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7., 2018.7.23.)

제93조의2 (교양대학) 교양대학에는 교학팀, 교양교육부, 바롬인성교육부, 교직지원센터, AI·인터넷윤

리센터를 둔다. (신설 2020.7.30., 개정 2023.4.25.)

제94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7.23.)

1. 부속기관 - 도서관, 기숙사, 박물관, 학보사, 방송국, 대학교회, 에코캠퍼스추진사업단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2019.4.25., 2020.1.20.)
2. 부속교육기관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한국생태학교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3. 부설연구기관 -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미래산업융합연구소, 조형연구소, 여성연구소, 아동연구원 (개정 2015.8.18., 2018.4.27., 2018.7.23., 2020.1.20., 2026.1.22.)
4. <삭제> (2015.8.18.)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7.)
- ⑤ 제1항 제1호의 부속기관 대학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기간을 정하여 전담목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7.23.)
- ⑥ <삭제> (2018.7.23.)

제94조의2 (도서관) ① 도서관에는 학술정보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8.) (개정 2018.4.27., 2018.7.23.)

제94조의3 <삭제> (2018.7.23.)

제94조의4 (기숙사) ① 기숙사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0.)

제95조 <삭제> (2015.8.18.)

제95조의2 <삭제> (2016.3.1.)

제3절 초등학교·유치원

제96조 (교장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의 유고시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8.)

제96조의 2(원장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7조 (하부조직) ① 초등학교에 사무와 행정을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일반직 6급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8., 2025.2.6.)

②유치원에 사무과를 두며,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의 2 학교운영위원회

제97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랑초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7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자문한다. (개정 2022.2.21., 2022.4.28.)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022.4.28.)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개정 2022.4.28.)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개정 2022.4.28.)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개정 2022.4.28.)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개정 2022.4.28.)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개정 2022.4.28.)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개정 2022.4.28.)
8. 학교급식 (개정 2022.2.21., 2022.4.28.)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신설 2022.4.28.)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신설 2022.4.28.)
11.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4.28.)
1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신설 2022.4.28.)
1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28.)
1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신설 2022.4.28.)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21.)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제97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 범위) 추천한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추천 범위는 교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로 규정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97조의5제3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7조의5(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7조의6(위원의 자격 및 위원의 의무 등)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7(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97조의6제6항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97조의8(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7조의9(회의 및 회의소집 등, 회의공개원칙)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의10(소위원회의 설치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정 2022.2.21.)

② 안전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7조의11(건의사항 처리 및 서류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제97조의3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2.21.)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97조의12(의안의 제출·발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2.21.)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7조의13(학교내외의 자생조직 및 이사회의 지원)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7조의14(운영경비 및 회의록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전,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1.)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의15(위임규정 및 심의결과의 시행등)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97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④ 학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절의3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의16(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화랑초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7조의17(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초등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원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7조의18(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7조의19(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7조의20(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의21(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7조의22(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23(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7조의24(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7조의25(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7조의26(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의27(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의4 서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운영위원회

제97조의28(목적) ①유아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서울 여대부속유치원 규칙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7조의29(위원의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인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22조의 3을 적용한다.

②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 수는 임기 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97조의30(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부모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각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성원이 안 되어 같이 운영할 경우는 학부모 및 교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선출관리위원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제97조의31(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하며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며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 투표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제97조의32(교원위원 위촉) ①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본원 재직 교원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능직)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한다.

-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위촉에 대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 회의 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추천할 수 있다.
- ⑦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원장이 위촉하며, 그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 회의 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97조의33(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7조의34(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②위원의 임기는 2년(또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7조의35(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②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위원이 제1항 및 제 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97조의36(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 ④학부모 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97조의37(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원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 한 때. 다만, 원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될 때
 5. 제97조의36 제3항을 위반한 때
-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 제97조의38(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7조의39(기능) ①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2.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유치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③제1항 제2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의40(의견수렴 등) ①운영위원회는 안전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해당 안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97조의41(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원장에게 전하고 원장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알린다.

④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알린다.

제97조의42(회의 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 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7조의43(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이를 제시한다.

제97조의44(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7조의45(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의46(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원장은 운영위원회 관련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의47(소위원회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 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 2항의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소위원회는 자문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 운영한다.

⑥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7조의48(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7조의49(자문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7조의50(제척) ①위원은 안건이 본인 및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이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의51(자문결과의 시행)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7조의52(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7조의53(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7조의54(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97조의55(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정원

제98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별표 2·별표 3과 같다.

제8장 보칙

제99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10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선출기관	임기	주 소
이사장	전필순	1897. 4. 7.	총 회	4년	서울·성동구 행당동322번지
이 사	한경직	1902. 12. 29.	"	4년	서울·중구 저동 2가 69번지
이 사	안광국	1909. 3. 16.	"	4년	서울·용산구 후암동 143의 8번지
이 사	김삼대	1915. 7. 16.	"	2년	대구시 공평동 14번지
이 사	배의취	1898. 9. 1.	선교부	4년	서울·종로구 연지동 1의 1번지
이 사	권도희	1907. 7. 20.	"	4년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번지
이 사	전마태	1894. 5. 30.	"	2년	"
이 사	김필레	1891. 11. 19.	여전도회	4년	"
이 사	한소제	1898. 10. 14.	"	4년	서울·종로구 혜화동74의 30번지
이 사	신의경	1898. 2. 21.	"	2년	서울·종로구 혜화동 22의 27번지
이 사	고황경	1909. 3. 6.	"	2년	서울·서대문구 대현동 산 1번지
이 사	유호준	1915. 11. 10.	유 지	4년	서울·용산구 원효로 1가 27번지
이 사	김취성	1895. 1. 23.	"	2년	서울·서대문·충정로 3가 1의 11번지

이 사 주수원	1909. 2. 25.	"	2년	서울서대문북아현동 3의 120번지
감 사 강만유	1899. 10. 5.	"	2년	서울서대문신촌동 70의 15번지
감 사 유 익	1907. 3. 12.	"	1년	서울동대문구 회기동 70의 10번지

제9장 청렴의무 등

제102조 (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4.28.)

제103조 (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02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2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8.)

부 칙 (1956. 3. 22. 문고제 364 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5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58. 7. 29. 문고제 1278 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58년 7월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962. 7. 30. 문학관 585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62년 7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964. 5. 27. 문고대 1040. 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67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69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0 - 145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0 - 159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 3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학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학 1042. 3 - 1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 일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대학 1042. 3 - 17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5423 - 5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여자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서울여자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1990. 7. 31. 문교예규 제 206 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1. 7. 22. 교육부 예규 제 215 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 10.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25422 - 130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반직원중 기능직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대학 81422 - 1178)

- ① 이 정관은 199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98조 별표 2중 1.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부 칙 (대학 81422 - 2619)

- ①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94조 제1항 변경.)

부 칙 (대학 81421 - 971)

- ① 이 정관은 199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의 「초등·고등교육」을 「학령전 아동교육·초등·고등교육」으로/제3조 제3호 신설/제92조 제4항중 「학적과」를 「연구지원과」로/제94조 제1항 2호중 「평생교육원」을 「사회교육원」으로, 「아동연구원」신설하고 「아동연구소」는 삭제/제7장 제3절을 「국민학교, 유치원」으로/제96조의 2 신설/제97조 본문을 제1항으로, 제2항신설/제98조 별표2·별표2-1·별표2-2 개정)

부 칙 (대행 81422 - 2699)

- ① 이 정관은 199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의 제1항 및 제2항·제92조 제4항 및 제6항·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374)

- ①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2호, 제51조, 제7장 제3절,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94조, 제98조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1520)

- ①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98조 정원중 별표 2 “1. 대학교 일반직 정원”과 별표2-1 “기능직의 직무구분과 직명별 인원표”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52)

- ① 이 정관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4절 정원 [별표 2-2] 2. 초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201)

- ① 이 정관은 199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43조 임면 제2항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346)

- ① 이 정관은 199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2조 하부조직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1148)

- ① 이 정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2조 하부조직 및 제94조 부속기관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509)

① 이 정관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2조 하부조직 및 제98조 정원[별표2]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부 칙 (대학 81422 - 14)

①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2조 제4항 취업봉사실로 개정)

부 칙 (대행 81422 - 348)

① 이 정관은 200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2조 하부조직 및 제94조 부속시설 개정)

부 칙 (대행 81423 - 883)

① 이 정관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8조 정원 (별표2-1) 개정)

부 칙 (대행 81422 -123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3절의 2 학교운영위원회 신설 및 제6장 교직원 제2관 신분보장 제50조의 2 명예퇴직수당 신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97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화랑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재 81422 - 208)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장 교직원 제43조 제3항 및 제7장 직제 제90조 제3항, 제4항 부총장 신설)

부 칙 (복지81800-234)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3절의 3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부 칙 (대재81455-1103)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98조 별표 2, 서울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변경)

부 칙 (대재81422-22/2002. 1. 5)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2조 하부조직 개정/ 입학관리처, 대외협력실 신설)

부 칙 (대재81422-834/2002. 6. 14)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 제2항 내지 제7항,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

항 제2호 신설 변경, 제92조 제5항 내지 제7항, 제94조 제1항 제2호변경)

부 칙 (사학81422-1136/2003. 8.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2조 제3항개정)

부 칙 (사학정책과-34/2004. 1. 6)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 제1항 개정/인사위원회 위원수 조정)

부 칙 (사학정책과-719/2004. 02.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직제 제4절 정원 제98조 정원/별표2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조정)

부 칙 (사학지원과-2020/2004. 06.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제5항, 제45조제6호, 제52조제1항제2호,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제3호 변경, 제43조의2, 제92조의2 신설변경)

부 칙 (사학지원과-1030/2005. 02.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제4항, 제94조제1항제2호 변경/학생복지과 취업봉사실, 사회교육원 명칭변경)

부 칙 (사학지원과-1418/2005. 03. 07)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제8항, 제48조제2항제3호 신설/제48조제1항 삭제/동조제3항, 제4항, 제7항 자구수정)

부 칙 (사학지원과-3242/2005. 05.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제2항, 제94조제1항제1호 변경)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852/2005. 10.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44조제9호 및 제10호, 제45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44조제7호, 제45조제4호 및 제7호, 제47조제2항 변경)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933/2006. 02. 13)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94조제1항제4호 변경, 동조 제5항 신설)

부 칙 (대학경영지원과-3798/2008.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7일 부터 시행한다.(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개정)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학경영지원과-4352/2008. 11.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제35조의3제1항 변경)

부 칙 (대학경영지원과-1450/2009. 07. 14)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4일 부터 시행한다.(제22조, 제24조의3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09. 10. 8)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8일 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3호, 제95조, 제98조
별표 2 개정)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3444/2009. 10. 19)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제24조제1항 단서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10. 7. 9)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제7항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10.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3조제1항, 제92조제1항 · 제7항내지제9항,
제94조제1항제3호 변경)
제2조 (경과조치) 제94조제1항제3호 부설연구기관이 ‘바름인성교육연구소’는 특성화사업 조건에 따라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10. 12.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97조제1항, 제98조 별표 2 변경)
제2조 (적용례) 제98조 별표 2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은 총정원제로 하고 직능별 · 직급별 정원은 대학교
에서 내규로 정하여 2010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543/2011. 1.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11. 5. 12)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92조제1항, 동조 제3항, 제94조제1항제2호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11. 11. 17)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제3항 변경, 제95조의2 신설)

부 칙 (사립대학지원과-7175/2011. 12. 05)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59조제3항 신설)

부 칙 (이사회 의결/2012. 01.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98조 별표3 변경) 다만, 제92조 제1항내지3항,
동조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제도과-987/2012. 02. 13/제3절의2 학교운영위원회 변경)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립대학제도과-4327/2012. 06. 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제4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1호 변경, 제43조제5항 삭제)
제2조 (전임강사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43조제4항 및 5항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13. 03.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3절의4 제97조의28 내지 제97조의55 신설)
제2조(최초의 위원의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13. 12. 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1항내지제4항 자구수정, 동조9항내지11항 신설, 제92조의3, 제92조의4 신설, 제94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자구삭제, 제97조의37 제1항 제5호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14. 08.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7항 자구수정, 제98조 별표3 직종 정원조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3항, 제94조 제1항 제2호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15. 08.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1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16. 01.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제11항, 제92조의5 제1항)

부 칙 (이사회 의결/2016. 08.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제11항)

부 칙 (이사회 의결/2016. 09.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부 칙 (이사회 의결/2016. 11.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제2항 제5호, 제6장 제1절 제1관, 제43조 자구수정, 제43조 제1항 변경, 제43조 제3항 변경,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 43 조 제7항 제8항 제10항, 제44조 제1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59조2의 제2항 자구 수정, 제 84조 제1항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4항, 제7항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18. 4.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5 제1항 신설 및 이하 각 항 번호 변경, 제92조 제1항 변경, 제9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삭제, 제92조 제13항 및 제14항 신설, 제92조의2 제1항 변경, 제92조의3 내지 5 삭제, 제93조 제1항 변경, 제93조 제2항 삭제, 제93조 제3항 변경, 제94조 제1항 변경, 제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제94조 제4항 및 제5항 변경, 제94조 제6항 신설, 제94조의2 삭제, 제94조의3 신설)

부 칙 (이사회 의결/2018. 7.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1항 변경, 제9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신설, 제92조 제13항 및 제14항 삭제, 제92조의3 내지 5 신설, 제93조 제1항 변경, 제93조 제2항 신설, 제93조 제3항 변경, 제94조 제1항 변경, 제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제94조 제5항 변경, 제94조 제6항 삭제, 제94조의2 신설, 제94조의3 삭제)

부 칙 (이사회 의결/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89조 제2항 자구 추가)

부 칙 (이사회 의결/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의3 제1항 및 제3호 내지 제4호, 제35조의4 제2항 제3호, 제35조의6, 제97조의6 제1항 자구 수정, 제94조 제1항 제1호 자구 삭제)

부 칙 (이사회 의결/2019. 6.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제3항 자구수정 및 호 신설, 호 번호 변경, 제43조의2 자구수정 및 제2항 삭제, 제51조 자구수정, 제52조 제1항 제3호 신설, 제4호 호 번호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13.)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정의학원 제317차 이사회(2019.8.2.) 결의에 따라 설치한 SI교육센터, 교직원지원센터는 이 정관 제92조 제11항, 제92조의5 제1항에 따른 SI교육센터, 교직원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9.12.13.)

부 칙 (이사회 의결/2019. 12.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0조의2 신설, 제92조 제3항 내지 제11항 자구수정, 제92조의3 자구수정 및 항 삭제, 제92조의5 자구수정, 제94조 자구수정, 제94조의4 신설)

부 칙 (이사회 의결/2020. 6.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의4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11항 자구수정, 제92조의3 삭제, 제92조의5 삭제, 제93조의2 신설)

부 칙 (이사회 의결/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제11항 자구수정, 제92조 제6항 자구수정, 제92조의2 제3항 신설)

부 칙 (이사회 의결/2021. 1.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의3 제1항 자구수정 및 제3호 신설, 제3호 내지 제5호 호 번호 변경, 제35조의3 제2항 자구수정, 제35조의4 제2항 제3호 신설 및 제3호 내지 제5호 호 번호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21. 4.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4제4항 신설, 제25조제3항 자구수정, 제34조의2제1항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1. 8.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1항 및 제4항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89조 제1항 내지 제3항 자구수정, 별표1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 자구수정, 제25조 제9항 신설, 제43조 제1항 자구수정, 제50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신설, 제84조 제1항 및 제3항 자구수정, 제89조 제1항 내지 제3항 자구수정) 다만, 제25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제43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22. 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7조의3제1항, 제1항제8호, 제3항, 제4항 자구수정, 제97조의10제1항 내지 제2항 자구수정, 제97조의11제1항, 제3항, 제5항 자구수정, 제97조의12제1항 자구수정, 제97조의14제3항제2호 자구수정, 제97조의15 조 제목변경, 제2항 내지 제4항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2. 4.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제3항 신설, 제51조 자구수정, 제52조 제1항 및 제1항제4호 자구수정, 제2항 자구수정, 제3항 신설, 제53조제1항 내지 제2항 자구수정, 제3항 신설, 제55조제1항 내지 제2항 자구수정, 제3항 신설, 제59조제2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라목 내지 마목 자구수정, 제59조제6항 신설, 제97조의3 제1항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 자구수정 및 신설, 제9장 및 제102조 내지 제103조 신설)

부 칙 (이사회 의결/2022. 1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제3항 내지 제7항 삭제, 제9항 및 제11항 삭제, 제12항 자구수정, 제15항 신설, 제92조의2제3항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53조 제2항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90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제1항 내지 제2항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3. 12.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제1항제7호 및 제45조제1항제6호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4. 2.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1호 자구수정, 제92조의2 삭제)

부 칙 (이사회 의결/2024. 8.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제12항 신설)

부 칙 (이사회 의결/2024. 12.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88조제1항 자구수정)

부 칙 (이사회 의결/2025. 2.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97조제1항 자구수정, 별표3 변경)

부 칙 (이사회 의결/2025. 6.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0조의2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의3제1항제1호, 제90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변경)
제2조(제2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후 선임될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다.(8년 가능)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사회 의결/2026. 1.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0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변경, 제94조제1항제3호 변경)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정원 3명

[별표 2]

대학교 일반직원

총정원 115명

[별표 3]

초등학교 일반직원

총계	7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